

(사)한국지반공학회 지반공학연구소

운영 규정

2017년 5월 11일 제정

2019년 6월 3일 개정

2020년 2월 3일 개정

2025년 1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이하 '우리 학회') 지반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반공학 분야의 연구와 이와 관련된 전문적 업무 수행, 그리고 KGS재난대응TF(이하 TF)를 통한 지반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전문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반공학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기초 및 응용연구
2. 정부 및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한 정책, 기준, 설계, 시방에 관한 연구
3. 자체 기획한 정책과제를 포함한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TF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지반재난 대응과 예방 활동 수행

제3조(소장) ① 소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연구소 및 TF 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상근직을 포함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직급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2.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3. 연구원 : 석사학위 소지자
4. 연구보조원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제5조(연구원의 임용 및 임기) ① 연구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상근 연구원은 계약직으로 한다.

③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채용 및 인사 등에 관해서는 '사무국 운영 규정'의 관련 항목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연구진) ① 소장은 연구과제별로 우리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진을 구성한다. 다만 지반공학 분야가 아닌 경우 비회원을 연구진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재난대응 관련 과제의 경우 TF 소속 전문가 참여를 우선 고려한다.

③ 연구과제별 연구진 구성안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제7조(업무) ① 소장 및 소속 연구원은 분장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 및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연구성과 자문을 받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학술 연구용역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징계) 연구원의 징계는 ‘사무국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무·사무국 담당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 전담이사를 간사로 하며, 연구소장과 전문위원회 전담이사를 포함한 위원 등 총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1. 연구소 운영규정의 개정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
3. 연구원의 급여, 연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소장은 차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년 12월까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소장은 전년도 결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실적서와 함께 매년 11월 말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12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간접연구비) 연구용역의 실행예산상 간접연구비는 ‘학술연구용역 운영 규정’의 간접연구비 조항을 준용한다.

제12조 (급여 및 경비) ① 상근 연구원의 급여는 연간 계약으로 정한다.

② 연구원의 급여는 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연구소의 운영경비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간접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상근 연구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기타 연구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무국 운영 규정’의 관련 항목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 (KGS재난대응TF) ① TF는 연구소 산하 전문조직으로, 지반재난 대응 및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② TF는 위원장(연구소장) 1인, 부위원장 2인(전문위원회 전담이사 당연직 외 1인), 간사 2인, 기술위원회소속 전문가와 지역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TF는 연구소 소속으로 운영하며, 필요 시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폐) 이 규정의 내용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개폐한다.